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7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03일

발 의 자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고광민,
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· 석, 박영한, 박환희,
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
유만희, 윤영희, 윤종복,
이민석, 이봉준, 이상욱,
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
최민규, 최재란, 허 ·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38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분양원가를 비롯하여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

- 이에 안정적 지속적 공개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
 - ※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원가/자산공개/사업결과 공개 실적
 - 2021.12.16.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2.01.17. 오금지구 1,2단지, 향동지구 2,3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2.02.24. 세곡2지구 1,3,4,6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2.03.07. 장기전세주택 28,282호 자산 공개
 - 2022.03.31. 내곡지구 1,2,3,5,6,7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2.04.29. 공공주택(아파트 101,998호) 자산공개
 - 2022.07.06. 마곡지구 1,2,3,4,5,6,7,8,10-1,11,12,14,15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2.09.22. 내곡지구 사업성 분석 결과 공개
 - 2022.10.13. 매입임대주택 22,532호 자산 공개
 - 2022.11.09. 고덕강일지구 8,14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3.02.15. 공공주택/건물 등 13만 1,160호 자산 공개
 - 2023.03.21. 마곡지구 9단지 분양원가 공개
 - 2023.03.30.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발표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분양원가, 자산현황,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규정함(안 제43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 ①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

1.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
2.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
3.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
4.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 항목, 시기, 방법 등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43조의2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</u></p> <p><u>①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</u> <u>2.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</u> <u>3.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</u> <u>4.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, 시기, 방법 등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